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글,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잊혀질 권리’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

최근 한 언론매체에 ‘라면 상무, 폭언 사원도 잊혀질 권리는 있다!’라는 제호의 기사가 실려 관심 있게 읽어 봤다.

위 기사의 내용인즉, 망각은 인류의 축복 중 하나로써 망각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며 고통스런 기억을 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 남겨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과거 SNS 기록은 물론 타인이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욕설이나 실수 등 굳이 들춰보고 싶지 않은 기록들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을 지적하면서 해당 당사자가 네티즌들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당사자 본인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가 과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남은 평생을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을 정도로 여론의 난도질을 당해야 하는지는 따져 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인터넷의 현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통제권이 유명무실한 만큼 ‘잊혀질 권리’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

우리에게 아직 친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라 함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 포털이나 SNS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는 영구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니기 마련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시글이나 사진 등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한 퍼가기로 인해 그 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에 이른다. 해당 게시글 등의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평생을 남의 입방아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고통에 놓이게 되고 또한 이른바 인터넷 상의 ‘신상 털기’ 등의 또 다른 피해에 시달릴 위험도 있다.

제발 이제는 좀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들춰지게 되는 고통은 아마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상처 부위의 염증이 가라앉을 무렵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격이라고나 할까. 현재와 같은 무한정보의 시대에 ‘알 권리’에 못지않게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일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Viviane Reding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출처: AP Photo)

유럽의 ‘잊혀질 권리’ 입법화 움직임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동 개정안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에게 그 정

보를 유지할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추가적인 전파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위 개정안은 유럽연합 각국 대표들의 논의를 위하여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에 회부되었으며 만약 원안대로 채택이 된다면 그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 그렇게 되는 경우 세계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잊혀질 권리’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한국의 ‘잊혀질 권리’ 도입 움직임

한편, 최근 새누리당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²⁾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주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연관검색어 서비스³⁾를 통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내 포털업체의 주장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관련 검색어의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일반인에 더해 연예인까지 연관 검색어 삭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연예인들의 강도 높은 삭제 요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온라인 상의 ‘잊혀질 권리’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일반인 및 연예인에 대해서는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기로 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급변 조치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지침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1) 다만 동법 제5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이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

2)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로서 국내 주요 포털업체가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3)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이상과 같이 ‘잊혀질 권리’는 이를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정보통제권에 포섭되는 권리로 이해하든지 간에 이는 우리 법제에서도 수용 가능한 개념이고 사회적으로도 논의를 진행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 개념인 것만은 사실인바 이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포털업체의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이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 A는 지인의 소개로 B라는 여자를 만나 1년 간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A와 결별한 B는 그 직후 A와 A가 다니던 회사, B의 어머니인 C 등에게 여러 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살했다.

이후 C는 사망한 딸인 B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지난 1년 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올려놓았는데 그 게시물에는 A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B에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

하여 그 동안 B가 1차례의 유산과 2차례의 임신을 한 사실, 두 번째 임신 이후 A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B와의 연락을 두절한 사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C가 A와 만나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A의 뺨을 때리자 A는 C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C의 합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거부한 사실, B가 약물 복용으로 자살했고 사망 후 6일 만에 발견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위 글이 게시된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는 A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면서 A의 실명,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글들도 올라왔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위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했다.

이에 A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폐쇄하고, 관련 댓글의 삭제 및 A와 관련한 검색 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관련 포털업체들에게 요구했으나 포털업체들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포털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와 관련된 게시글과 A를 비난하는 댓글이 여전히 무수하게 남아 있다 A는 해당 포털업체들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에서 A가 승소하자 포털업체들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

응태도 등에 비추어,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포털업체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포털업체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3인의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서 “포털업체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 별개의견은 가장 완성된 참여적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기능,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견에 비해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로서의 포털업

체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포털업체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반드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정보나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 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여자친구 혹은 이혼한 아내와의 사진이 유포되어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결혼을 앞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과거 애인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검색되는 경우, 성형 이전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 등이 그러하며 특히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해 게시되거나 유포되어 본인이 이를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잊혀질 권리’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두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

필자가 중재위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청구인이 처음에는 정보보호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다가도 결국에는 상대방인 언론사나 방송국이 문제가 된 기사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동영상 다시 보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경

힘하게 된다.

언론사 입장에서든 반론이나 정정보도문의 게재 혹은 금전배상보다는 해당 기사 등의 삭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결국 조정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건 혹은 그렇지 않건 간에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이의 수용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 내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다만,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과의 충돌 문제, 공익적 기록의 삭제 문제, 디지털 유산(遺産)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의 게시물 처리 문제, 정보를 생성하지도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조치의무 부과와 타당성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잊혀질 권리’를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5월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를 통해 SNS에 한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법제화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공공의 알 권리라는 두 상충하는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